

주택 부동산세 경감 시켜야 다!



과도한
세 부담

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종부세 과세

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



소득 5천만원 이하
1세대 1주택



12.0만명
1인당 평균
약 77.8만원



소득 2천만원 이하
1세대 1주택



7.3만명
1인당 평균
약 74.8만원



소득 수준에 비해 **세 부담**이 **과중**합니다

특별공제* 도입무산으로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



*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 → 14억원 상향되는 효과

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



1세대 1주택자 총세액



세부담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절실합니다!



기본공제금액 인상



다주택자 종과 폐지



세율 인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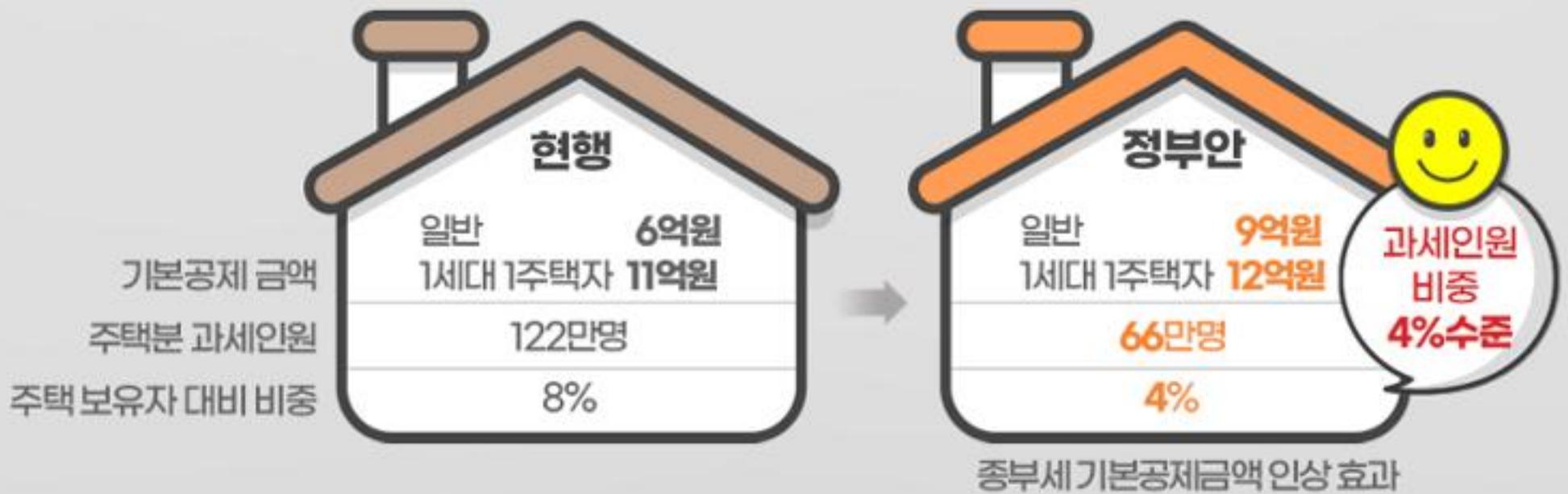


정부안은 '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



정부안은 종부세가 급등하기 이전인 '20년 수준으로
세부담을 환원하려는 것입니다

정부안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



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종부세 세율은 인하해야 합니다

과세표준	'09~'18년	'19~'20년		'21~'22년		개편안
		일반	다주택	일반	다주택	
3억원이하	0.5	0.5	0.6	0.6	1.2	0.5
3~6억원		0.7	0.9	0.8	1.6	0.7
6~12억원	0.75	1.0	1.3	1.2	2.2	1.0
12~25억원	1.0	1.4	1.8	1.6	3.6	1.3
25~50억원		2.0	2.5	2.2	5.0	1.5
50~94억원	1.5	2.0	2.5	2.2	5.0	2.0
94억원초과	2.0	2.7	3.2	3.0	6.0	2.7

연도별 주택분 종부세 세율(%)

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,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

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
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, 부동산 시장 하향세,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
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.

